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년 8월 21일

나. 발의자: 이규선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0년 8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0. 8. 3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규선 의원)

가. 제안이유

- 현수막 지정계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등포구 시설 관리공단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경우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현수막 지정계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9조제8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임선영)

- 본 안건은 현수막 지정계시대 및 지정벽보판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은
 - 안 제19조에 현수막 지정계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 현수막 지정계시대(47개소)와 지정벽보판(25개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7
------------	-----

발의년월일: 2020년 8월 일
발 의 자: 이규선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현수막 지정계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경우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현수막 지정계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9조제8항)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20. 8. 21. ~ 8. 25.)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계시대 및 지정벽보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현수막 지정계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① ~ ⑦ (생략) <u><신 설></u>	제19조(현수막 지정계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계시대 및 지정벽보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한다.
⑧ (생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